

「2025년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」 수행기관 모집 공고

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「2025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」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25년 1월 10일

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

I

공모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- 장애인 대상 장애유형별·정도별·지역별 다양한 직업능력개발, 취업촉진 등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당사자의 지역사회로의 자립기반 마련

< 추진방향 >

-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사업(장애유형별): 민간 일자리사업으로 연계 가능한 신규 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직무 훈련을 강화
-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(권리중심): 참여자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직무활동이 참여자의 의미있는 변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업 운영

□ 공모개요

- 사업명: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
- 사업기간: 2025.2월 ~ 2026.12월 (23개월) ※ 공모절차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
- 사업비: 10,428,648천원(도비 100%)
- 선정기관: 46개 기관 ※ 지원현황 및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

- 공고기간 : 2025. 1. 10.(금) ~ 1. 24.(금) 18:00까지(15일간)
- 사업량 : 775명 내외(장애유형별 45명 내외, 권리중심 730명 내외)
- 지원사업 유형 및 운영기준

구 분	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	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
선정규모	9개 기관 내외	37개 기관 내외
사업량	참여자 45명 내외(기관별 5명)	참여자 730명 내외(기관별 10~30명) ※ 전담인력 일자리 참여자 10명당 1명 배치
지원규모	○ 보조금: 기관별 50,000천원 - 인건비 (참여자, 사업보조인력) - 사업비 - 관리운영비	○ 보조금: 기관별 참여자 규모에 따름 - 인건비 (참여자 및 전담인력) - 운영비 (사회보험료 기관부담분)
사업대상	○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인	○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의 미취업 중증장애인
사업내용	○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특화직무 개발 및 훈련 ○ (선택) 직무 수행을 위한 참여자 고용 ○ (선택) 장애유형별 특화직무와 연관된 민간 취업 연계 등	○ 심한 정도의 장애로 인하여 취업의 기회가 극히 제한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특화직무 활동 ○ 직무 수행을 위한 참여자 고용 ○ 지역사회 연계 직무 활동 수행
참여자 직무내용	○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직종 및 직무 제안 가능	○ 장애인권익옹호활동 ○ 문화예술활동 ○ 장애인인식개선활동
운영인력 구성	○ 전담인력 1인 배치 ※ 보조금 예산범위 내 인건비 편성 가능	○ 참여자 10명 당 전담인력 1명 배치 ※ 보조금 내 인건비(보수·사회보험료) 편성
참여자 우대조건	없음	○ 중증장애인 중 중복장애인, 뇌병변장애인, 발달장애인 등과 최근 지역사회로 자립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 참여기회 제공 ○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전액 사용
장 소	○ 지속적,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 필요 ○ 지역 내 시설, 공간 등 인프라 활용 가능	
비 고	○ 신청기관의 운영역량에 따라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여 프로그램 운영 가능 - 「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·직업재활 지원 조례」 제6조 4의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,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지역사회(장애인)시설 등 ※ 단, 모든 사업비는 수행기관에서 일괄 관리·집행(사업비 재교부 불가)	

II

공모사업 세부내용

□ 수행기관 주요역할

- 일자리 참여자 선발 및 직무배치, 참여자 복무관리
 - 참여자 공개 모집 · 지원 접수 · 심사 · 선발
 - ※ 참여자 선정기준은 수행기관에서 공모신청 시 제시하되 수행기관 선정 이후 사업안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 - ※ 참여자는 매년 공개 모집하며 총 모집인원 중 30% 이상은 신규 참여자를 선발토록 함
 - 근로계약 체결, 직무배치, 근태관리(출결·연가·참여중단 등), 대기자 관리
- 일자리 참여자 직무훈련 및 직무활동 지원
 - 장애유형 또는 정도에 따른 적합 직무 발굴 및 운영
 - (장애유형별) 직무 훈련, 일자리 제공, 자격증 취득 등
 - (권리중심) 직무활동 계획* 수립·실시
 - * 직무활동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권익옹호, 인식개선, 정책제언 등 지역사회 환류방안 포함
 - 수행기관별 참여자 활동 기록 등
- 참여자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수행
- 참여자 및 전담인력 교육, 사업자 법정 의무교육 등
-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, 관계서류 구비, 정산·실적 보고 등 수행

□ 참여자 근무조건

구 분	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	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
고 용	예산 범위 내(보조금 75% 이내)에서 필요 시 사업 참여자 고용 가능	중증장애인 10~30명 (기관의 상황에 따라 참여자 인원 설정, 10~30명)
근무기간	○ 2025. 3월 ~ 12월 (10개월 이내) / 2026. 1월 ~ 12월 (12개월 미만) ※ 근무시기는 공모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참여자는 매년 공개 모집하여 선발	
근무시간	○ 사업운영 계획에 따름	○ 월요일 ~ 금요일 근무원칙 (토요일 무급휴무일, 일요일 주휴일) ○ 월 80시간, 월 64시간 근무 채용비율 2대8
급 여 (훈련수당)	○ 2025년 최저시급 10,030원 적용	○ 2025년 최저시급 10,030원 적용, 주휴수당 포함 ○ (월 80시간) 월 1,048,140원 (월 64시간) 월 838,510원 ※ 사업 참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2중 취득자 고용 불가

□ 지원내용

- 인건비: 해당 사업을 직·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(참여자, 전담인력 및 사업보조인력 등)에 대한 인건비
 - (권리중심) 참여자 10명 당 전담인력(주40시간 근무 기준) 1명
- 사업비: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(직무 훈련, 활동과 관련된 경비)
 - ※ 단, '권리중심'의 경우 보수 및 사회보험료 외 사업비 지원 없음
- 관리운영비: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접 경비

구 분	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	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
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여자 고용 시 총사업비의 75% 이내 ○ 참여자 미 고용 시 총사업비의 30% 이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여자 인건비 ○ 전담인력 인건비 (월 2,096,270원)
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운영비, 강사료 등 ○ 홍보비(사업비의 3% 이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비: 사회보험료(기관부담금) 편성 후 참여자 추가 고용 예산으로 편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자(월80시간) 월146,740원/명 - 참여자(월64시간) 월117,390원/명 - 전담인력 월293,480원/명
관리 운영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총사업비의 5% 이내 ○ 사무용품 구입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	

※ 유의사항

- 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·기계 등 시설·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신·전화 설비 등 자본적경비(자산취득 등)와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, 공과금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경직성경비 및 연구용역비로는 사용 할 수 없음
- 사업 수행을 위해 임차료, 집기 등 지출 필요 시 사업신청 단계에서 예산편성내역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함
- 수행기관은 같은 회계연도 내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2조,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.
- 수행기관은 같은 회계연도 내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2조, 제7호 및 제9조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실적보고서 검증과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사항은 경기도 지침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공모 접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에서 제안한 프로그램 및 예산계획은 조정될 수 있음
- 참여자는 매년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근로계약은 회계연도 내에서 체결

□ 공모 신청

- 공고기간: '25.1.10.(금) ~ '25.1.24.(금) / 누리센터 홈페이지
- 접수기간: '25.1.20.(월) 09:00 ~ '25.1.24.(금) 18:00까지 / 5일간 방문접수
 - 접수처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309호, 자립지원팀
 - 전자우편: nurim2@ggwf.or.kr
- 신청자격: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, 시설, 단체 또는 협동조합
 - ※ 공고일 현재 휴·폐업, 업무정지 등 운영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
 - ※ 장애유형별, 권리중심 중복 지원 불가
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
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54조에 의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
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6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
 - 「민법」 및 기타 개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
 -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
 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

〈지원제외 대상 단체〉

- ① 동일단체의 유사·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·사업을 하는 단체
- ②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
- ③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
- ④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- ⑤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- ⑥ 보조금 횡령·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
- ⑦ 협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보조금 횡령·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, 협약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

□ 제출서류 (붙임 참조)

- 공모신청서 [서식1~8] 및 증빙서류를 하나로 합철 또는 제본한 자료
총3부: 원본 1부, 수정 가능한 한글(HWP) 파일 1부, PDF 1부
- 증빙서류 [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 사본, 기타 사업
관련 참고자료] 합본 PDF 1부
- 제출방법
 - 원본은 방문접수, 파일은 전자우편 접수
 - 공모신청서 1부는 현장접수 당일 제출, 발표 PPT 자료는 1차 서류심사
후 별도 제출 안내 예정

번호	제출자료	비고
1	공모사업 신청 공문 및 사업신청서	서식1
2	기관 소개서	서식2
3	유사사업수행 실적 및 처분사항	서식3
4	사업계획서 요약본	서식4-1 또는 4-2
5	사업계획서	서식5
6	공모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	서식6
7	서약서	서식7
8	기관(개인)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서식8
9	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또는 법인등기부등본* * (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)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(비영리법인의 경우) 법인등기부등본 (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)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으로 제출	
10	정관 사본	선택 제출
11	기타 사업관련 참고자료 - 연계사업 협약서, 시설대관 계약서류 등	

※ 작성 유의사항

- 제출 양식 미준수 혹은 제출 마감일(1월24일 18:00)까지 서류 미비 시 추가 접수 불가
- 필수 제출서류 누락 또는 신청서 직인*, 동의서 내 서명 등이 없을 경우 미접수 처리
* 직인의 경우 해당 페이지를 스캔하여 제출(이미지 파일 형태의 직인으로 제출 불가)
-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추후 선정되어 협약 시 추가
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□ 문 의

-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자립지원팀 T.031-299-5072, 5076, 5009

□ 신청 서류검토: 누리센터 담당부서 심사

- 심사일정: '25.1.20.(월)~2.24.(금) 예정
- 신청 서류 기초사항(신청기관 자격, 서류 미비 여부 등)을 확인

□ 선정방법: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「선정심사위원회」 개최·심사

- 심사일정: '25.1.31.(금)~2.12.(수) 예정 ※ 접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
 - 1차 서류심사: 기관(신뢰성, 환경), 사업(필요성, 적절성), 예산 등
 - 조정 사업계획 제출: 1차 서류심사 합격기관에 한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 조정
 - 2차 대면심사: 프리젠테이션(PT)를 통한 제안사항 발표 후 질의응답 및 위원 심사
 - ※ 사업내용발표(약5분) 및 질의응답(약5분) 등 총 10분 내외, 발표순서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

□ 심사지표안

- 총점 100점: 기관평가(30점), 사업평가(40점), 예산평가(30점)

항 목	배점	평가항목	비고
기관평가 (30점)	10	환경 구축	※ 탁월 10점, 우수 8점, 보통 6점, 미흡 4점, 부진 2점
	10	기관 신뢰성	
	10	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	

항 목	배점	평가항목	비고
사업평가 (40점)	10	사업 필요성	※ 탁월 10점, 우수 8점, 보통 6점, 미흡 4점, 부진 2점
	10	사업 내용의 적절성	
	10	목표 타당성	
	10	사업효과의 확장성	
예산평가 (30점)	30	예산편성의 적절성	※ 탁월 30점, 우수 24점, 보통 18점, 미흡 12점, 부진 6점

※ 상기 심사기준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**결과발표: '25.2.12.(수) 예정 [누림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]**

VI

업무협약 체결

□ **오리엔테이션 및 업무협약 체결: '25.2.18.(화)**

- (예비) 수행기관 오리엔테이션
 - 사업개요, 수행기관 준수사항, 보조사업비 운용 등 안내, 질의응답
- 누림센터-수행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
 - 협약기간: '25.2.(협약체결일)~'26.12. / 23개월
 - 수행기관과 교부조건 명시하여 업무협약 체결
 - 협약 체결 시 수행기관 대상 회계 및 사업 집행지침 교육 실시
 - 보조금 교부 및 사업 개시(3분할)
- 사업 전반 관리 전담인력 지정 운영
 - 참여자 모집·관리, 교육과정 운영, 취업지원, 월별 추진실적 제출, 보조금 교부까지 사업운영 전체 총괄

VII

추진 일정

사업절차	내용	기간
사업모집 공고	- 누리센터 홈페이지 공시사항	'25.1.10. ~1.24.
↓		
사업신청서 제출 및 접수	- 사업신청서, 누리센터 사업담당부서 제출(방문 접수)	'25.1.20. ~ 1.24.
↓		
1차 심사	- 기관, 사업, 예산 평가	'25.1.31. ~2.3.
↓		
사업조정·보완	- 사업계획서 및 예산 조정내역 최종 반영	'25.2.4. ~2.7.
↓		
2차 심사	- 대면 심사	'25.2.10. ~2.11.
↓		
결과발표 (참여자 모집 공고)	- 수행기관 선정, 참여자 모집 공고(누리, 수행기관)	'25.2.12. ~2.26.
↓		
오리엔테이션 협약체결	- 사업 추진 세부사항 안내 - 누리-수행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, 사업 개시 - 보조금 교부(누리센터 → 수행기관)	25.2.18.
↓		
사업운영	-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및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운영 - 수행기관 수시 모니터링, 미흡사항 개선 누리센터 상반기 현장점검(자문)단 운영 예정	'25.2.~12.
↓		
사업 평가 및 보조금 정산	- 월/분기별/연간 사업 평가 및 보조금 정산	'25.3. ~ '26.1.

※ 일정은 사업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사업자 선정 이후 절차

- 사업계획서 보완, 누리센터-수행기관 간 협약 체결: '25. 2월 중순(예정)
 - 예산 조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추진
-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시행: '25. 2월 예정

□ 유의사항

- 타 기관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이 확인될 경우,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평가 점수가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
- 제출된 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
-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·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함
-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(누리센터)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보험료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함
- 1차 보조금 지급 전에 보조사업자 대상 회계 및 사업 집행지침 교육 실시 예정
- 아래와 같은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
 -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- 법령의 규정,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자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
< 법령 위반 「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」 >

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
2.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
3.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
4.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
-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
-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
- 이 외 다음과 같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하였을 때

< 보조금 교부 조건 >

-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
- 시공 및 용역, 구매계약 시 「지방계약법령」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
-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
-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,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
-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
-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(이월 시 별도 명시)
-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

- 부정수급 행위 시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,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
 - 명단 공표, 수행 배제, 제재부가금 징수, 벌칙(징역 또는 벌금) 부과
-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을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